

「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정기-2차)

(구미 스포츠 훈련센터 조성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5년 10월 2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5년 10월 2일

라. 상정일자: 2025년 10월 17일

제2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문화체육관광국장 박 영 일

나. 제안이유

- 체계적인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조성
- 스포츠 훈련센터 조성 및 기존 숙소동 리모델링 등 체육시설 인프라의 구축으로 구미시의 엘리트 선수들의 체계적 육성

다. 주요내용

【취득재산】

□ 구미 스포츠 훈련센터 조성

- 위 치 : 해평면 해평리 472-1번지 일원(해평청소년수련원)
- 대 상 : 건물 1개동(지상 2층, 연면적 600㎡)
- ※ 건물 1개동 리모델링(지상 2층, 연면적 679㎡)
- ※ 사업부지 4,916㎡[시유지 4,100㎡, 국유지 816㎡(대부예정)]
- 사업기간 : 2025 ~ 2027년
- 총사업비 : 4,000백만원(전환 1,200 시 2,800)
- ※ 사업비 산출내역
 - 훈련센터 신축(600㎡) 2,597백만원(4,329천원/㎡당)
 - 숙소 리모델링(679㎡) 1,000백만원(1,473천원/㎡당)
 - 설계비 및 감리비 등 403백만원
- 기준가격 : 2,597백만원(건축공사 설계비, 공사비, 감리비 등)
 - 건 축 물 : 2,597백만원
- 주요시설 : 훈련센터(쓰림장, 헬스장, 사무실, 탈의실 등)
숙소동(숙소 20개소, 샤워실, 화장실 등)
- 추진현황 및 향후추진계획
 - 도 전환사업 신청 : '25. 4.
 - 공유재산심의 및 투자심의 : '25. 4 ~ 6.
 -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: '25. 10.
 - 공공건축 사전 검토 : '25. 9 ~ 12.
 -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: '26. 1 ~ 7.
 - 공사 착공 및 준공 : '26. 8. ~ '27. 8

라. 근거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12조

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정기-2차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백만원)

구 분		건수	수량	금액
취득	계	1건	600	2,597
	3.기타 취득	1건	600	2,597
		토지 건물 기타		

취득재산 목록(총괄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백만원)

구분	재 산 의 표 시			추정가액	취득 시기	사 유	소유자	비 고
	재산 구분	소 재 지	수량 (m ²)					
총계			600	2,597				
취득	건물	해평면 해평리 472-1 외 3필지	600	2,597	2027년	구미 스포츠 훈련센터 구성	구미시	신축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관리계획안은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과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지역 체육 인프라를 한 단계 확충하고, 지역 엘리트 선수들의 체계적 훈련 기반이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됨. 특히, 사업부지가 기존 청소년수련원 부지로, 토지 매입비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점은 재정적 효율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판단됨.
- 다만, 신축 및 리모델링 이후 발생할 운영비(전기, 수도, 인건비, 유지보수비 등)는 구미시 재정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음. 따라서, 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운영 계획 및 운영 단계에서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

- 해평수련원 부지의 활용이 본격화된 것은 긍정적이며, 엘리트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독립된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입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됨. 씨름단 뿐 아니라 다양한 선수단과 타 시군 선수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종합 시설로 조성해야 함.
- 씨름단 외 종목 활용이 고려되지 않았고, 청소년수련원 기능이 사라진 데 대한 대안과 의견 수렴이 부족하여 청소년 시설과 체육시설 간의 균형이 미흡한 점이 아쉬움.
- 기존 건물은 노후화로 개선이 필요하나 사업비 규모가 큰 만큼 선수단에 대한 성과 등 예산 투입 타당성에 대한 부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, 이전 후 기존 부지 활용 계획 역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.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 략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